「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5월 7일

나. 발 의 자: 김정도・김근한・김민성・김재우・박교상・신용하・이지연・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10인)

다. 회부일자: 2024년 5월 8일

라. 상정일자: 2024년 5월 17일
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김 정 도 의원

나. 제안이유

○ 과거 국공유지에 경로당을 지어 등록경로당으로 운영 중이나, 현행 조례상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의 경우 시장 소유의 토지 경로당에만 지원되고 있어 국공유지 등록경로당임에도 유지보수 등이 지원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코자 함.
또한, 경로당 건축비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관내 어르신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정된 환경을 영위하는 것에 기여코자 함.

다. 주요내용

○ 국공유지 토지매입비 지원 단서조항 신설(안 제5조제3항)

○ 지원기준 비용 예산범위 상향(안 제6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47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장 창 곤

○ **본 개정조례안은**

- 국공유지에 위치한 등록 경로당의 토지매입비 지원 근거 마련과 경로당 신축·증축 등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한 어르신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조건) ①·② (생　략)	제5조(지원조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양지화 사업 등으로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유지 2. 구미시 등록 경로당(20년 이상)
제6조(지원기준) 시장은 경로당 1	제6조(지원기준) ----------

개소 당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축, 재건축 : 3억원 이내 2. 증축, 리모델링 : 5천만원 이내 3. (생 략)	---------- ---------- ----------. 1. ---------- 6억원 --- 2. ---------- 2억원 ---------- 3. (현행과 같음)

-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경로당 지원조건의 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조정을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집행기관에서는 상향된 지원 예산범위에 따른 적절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구미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